

공고번호 : 한돈협지 313-1호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 양분저감 시설 인정방안 마련연구 용역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 양분저감 인증방안 마련 연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용역 계약 기간 : 23년 8월 ~ 12월 말 (총 4개월)

다. 용역 계약 금액 : 50,000천원

※ 세부 규정의 경우 한돈자조금 규정에 준용

라. 용역 범위 :

- 농가별/처리방법별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 저감량 조사
- 오염삭감시설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마련

2.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 위와 관련된 유사 연구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대학 및 기관, 단체, 연구소

3. 입찰일정

○ 입찰공고 기간 : 2023년 7월 28일 ~ 8월 7일 (한돈협회 및 나라장터 공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시기)5항,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1항 준용

○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 2023. 8. 7(월), 17시 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3층 (사)대한한돈협회

(E - mail 접수처 : rlagkwp@naver.com)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심사위원회(공개발표평가) 계획 : 2023. 8. 9(수), 14:0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사)대한한돈협회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3. 8. 11(금)
 - 유찰 : 유찰시 10일간 재공고하며, 2회 유찰시 적격심사로 협상 대상 선정
 - 재공고 : 8/8 재공고 → 8/17 등록마감 → 8/18 심사위원회(제안서 심사 또는 재유찰시 적격심사) → 8/21 협상 및 계약체결
- ※ 세부 일정 및 장소,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비 집행 계획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사업 실적 증빙서

5. 낙찰자 선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35조 5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심사기준표(별첨)를 참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평가 한 후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대한한돈협회의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명단은 비공개
 - 협상은 제안서 기술 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단,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 (세부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분야의 ①(15)-②(15)-③(15)-④(15)순
-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연구용역비 한도

- 연구용역비 한도는 50,000천원(제세공과금 포함)으로 하되, 제안자가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과 사업비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 선정
- 연구용역의 특성상 연구용역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사항

- 계획서 및 제안서 양식(첨부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한돈자조금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발한 용역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사)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김하제 과장(T. 02-581-97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사 단 법 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별첨>

정화방류 처리시설 양분저감 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 용역 선정 심사 기준표

□ 심사기준표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채 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20)	① 사업 수행경험(실적)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 하는가?	10	
		② 사업 수행 인력 전문성 (자격증, 경력) -인력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10	
	정성적 평가분야 (60)	① 용역사업의 이해도 -제안의 내용 및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15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목적, 사업내용, 추진절차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15	
		③ 사업계획의 타당성 -목적 및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타당하고 적합한 사업 추진방법, 절차, 일정이 타당한가?	15	
		④ 사업계획의 체계성 -목적 및 사업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 추진계획이 체계적인가?	15	
	가격 평가 (20)	① 사업 예산의 적정 배분 -사업 소요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가?	20	
		총점	100	

※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심사 위원	성 명	서 명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 양분저감 인증방안 마련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농경지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최근 한돈 농가에서는 발생한 분뇨 내 양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후 수계로 방류하여 처리하기 위해 농가 내 개별정화처리시설 이용한 정화방류가 확대 필요
- 정화방류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 저감에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평가 기법 등에서 오염총량 삭감시설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가에서 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개별농가의 정화방류 시설의 수질 오염 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필요

2. 추진 방안(안)

- 1) 농가별/처리방법별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 저감량 조사
- 2) 오염삭감시설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마련

3. 향후 이용 방안

- 농가 단위 정화방류 인허가 확대에 인한 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 애로 사항 해소
- 정화방류 수질오염 삭감시설 인정을 통한 시설 지원